

어떻게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 라이프라인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은 매년 자신이 수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수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증명원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가입한지 1년이 되기 104일 전에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간 인증 양식을 보내올 것입니다. 이 양식은 분홍색 봉투에 넣어 발송합니다. 수혜를 계속 받으려면 양식 중에서 '방법1-프로그램 기준(the Method 1 Program-Based)' 혹은 '방법2-소득 기준(the Method 2 Income-Based)' 섹션 중 하나를 12개월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 상에 표시돼 있는 기한 내에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완성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돼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프로그램 기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공공 지원도 받고 있지 않다면 양식 상의 '소득 기준' 인증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 청각 장애자가 있고 두 개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면 그 두 라인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양식 상의 관련 부분을 기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인증 기관이 기한 내에 여러분의 신청 양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며칠 전에 양식을 보내 우편 마감일까지는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늦게 도착한 양식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수혜 자격 인증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전화회사는: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삭제합니다.
- 서비스 종류를 할인이 되지 않는 일반 가정용 서비스로 바꿉니다.
- 필요할 경우, 보증금(deposit)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이나 두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혜택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전화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만약 통보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할인 요금과 정상 요금의 차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라인 할인 자격은 언제든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에서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전에 부당하게 할인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불해야 합니다.

청각 장애자

가족 중 청각장애자를 위해 두번째 라이프라인 연결을 요청할 경우 두가지 양식 중 해당 섹션에 기입하고 양식 작성 안내서를 참조해 해당 가족 성원이 전자타자기(teletypewriter) 혹은 TTY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증명서를 첨부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송부하는 자료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사본을 보내고 원본은 보관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장거리 전화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전화 요금은 로컬 전화요금보다 비싸며 요금이 빨리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로서 여러분은 장거리 전화를 걸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일 경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전화기로 장거리 전화나 유료 로컬 전화를 거는 것을 방지하는 통화 블럭킹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더라도 여전히 걸려 오는 장거리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무료 수신자 부담(toll-free)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전화는 선불 전화카드를 이용해 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는 편의를 위한 옵션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도 통화 대기(call waiting), 수신 번호 확인(caller ID) 등과 같은 선택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옵션들에는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들을 주문하기 전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 전화 잭의 설치에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전화선 연결 비용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화선을 끄는 잭이 집에 미리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잭 설치비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참조: 캘리포니아주는 주택 소유주가 임대 주택에 사용 가능한 하나의 잭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컬 플랜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3통 이상의 로컬 전화를 사용한다면 고정 요금 서비스를 고려해 부십시오. 정량 요금 서비스는 여러분이 하루에 1-2통의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적당한 서비스입니다.

유료 로컬 통화(Local toll calls)는 별도 요금이 청구됩니다. 유료 로컬 통화란 로컬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났지만 장거리 전화로 포함되기에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전화를 말합니다. 유료 로컬 통화 요금은 언제 어디서 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유료 로컬 통화 요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 www.cpuc.ca.gov), 주의 공공 시설 통제 기구로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만약 전화회사 혹은 자격 승인 기구와 해결하기 힘든 불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 위원회의 소비자 담당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주소: CPUC's Consumer Affairs Branch, 505 Van Ness Ave.,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800-649-7570, 415-703-1170. 팩스: 415-703-1158. 이메일: consumer-affairs@cpuc.ca.gov.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California Lifeline, www.CaliforniaLifeline.com)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인증 기관의 웹사이트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신청 양식 샘플 및 설명서, 자주 질문되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 전화사 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CPUC 온라인 정보와도 연결됩니다. 새로운 서비스 신청은 전화 866-272-0349(영어) 혹은 866-272-0350(스페인어)으로 그리고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처리 상태를 알고 싶으시면 전화 877-858-7463(영어/스페인어) 혹은 888-858-7889(TTY)로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전화 접속 프로그램(The California Telephone Access Program, www.ddtp.org/CTAP)은 시청각, 운동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통신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800-806-1191 (음성); 800-806-4474 (TTY). 스페인어: 800-949-5650 (음성); 800-896-7670 (TTY).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은 소비자에 대한 조언과, 불만 처리 기관으로의 연결 및 소비자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는 기관입니다.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대화 가능합니다. 전화: 415-777-9635, 213-624-8327. 이메일: hotline@consumer-action.org.

전화사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하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신이 가입해 있는 전화회사에 연락 하십시오. 전화번호는 전화요금 청구서 상에서 혹은 전화번호부의 "전화회사 (Telecommunications Carriers)"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5개 전화사들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개 회사에 대부분의 라이프라인 수혜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 AT&T California: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음성 응답 시스템: 800-446-5651 (영어)/800-882-0521 (스페인어); 서비스 주문: 800-288-2020 (영어)/800-870-5855 (스페인어)/800-651-5111 (TTY); www.att.com/lifeline
- Verizon: 전화: 800-483-4000 (영어)/800-743-2483 (스페인어)/800-974-6006 (TTY); www.verizon.com.

소득 증명

라이프라인을 위한 소득 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주 및 연방 세금 보고(tax return) 자료
- 최근 1년내에 취득한 소득 명세서 (Income statements) 혹은 봉급 명세서 (paycheck stubs)의 연속 3개월치.
- 자녀 부양 관련 서류.
- 소셜시큐리티, 참전용사 관리국, 은퇴 연금, 실업 보조금 혹은 근로자 보조금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증서.
- 이혼 증서(divorce decree).
- 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소비자 행동 (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221 Main Street, Suite 480
San Francisco, CA 94105
415-777-9635
TTY: 415-777-9456
hotline@consumer-action.org

523 W. Sixth Street, Suite 1105
Los Angeles, CA 90014
213-624-8327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상담 가능.

이 소책자는 소비자행동이 AT&T 캘리포니아와 제휴해 발행했습니다. © 2009

소비자 행동 출판물 (a consumer action publication)

라이프라인으로 절약하세요!
라이프라인 할인 전화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에 도움을 줍니다



